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4. 1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76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2. 4. 14.)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은승일)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7. 13)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및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의 2)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1. 9. 10. ~ 2022.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제외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2021년 전국의 지방보조금은 18조 3,625억원 규모로, 2017년의 13조 9,311억원보다 31.8%(4조4,314억원) 증가하였고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수단, 선심성 사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지방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로 우리 구 최근 3년간<sup>1)</sup>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관리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은 2013년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신설로 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이 법제화되었음.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보조금에

#### 1) 우리구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현황

연도	총액한도 적용액	예산편성액
2020	16,195백만원	19,049백만원
2021	17,466백만원	33,425백만원
2022	19,417백만원	42,490백만원

※ 2021년도부터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이 지방보조금 심의에 포함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2일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이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보조사업 수행, 지방보조금의 관리·반환 및 제재·벌칙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와 동일하게 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 안 제4조(보조대상 사업) 및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에서는 법률의 약칭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하여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한 것임. 다만,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조의 제목 및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sup>2)</sup>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것임. 그 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6조의 제목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로 규정하는 것이 <입안심사기준><sup>3)</sup>에 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3) <법령입안심사기준>

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해당 법률 제26조제2항에 이미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규정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한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8조(교부방법) 및 제25조(성과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신설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sup>4)</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포상금

---

약칭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기관,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명칭일 경우 근거조문이나 근거가 되는 장·절이 따로 있으면 그 장·절의 제목에서는 그 행정기관, 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정식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근거 조문이나 장·절에 앞서서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될 때에는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그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되, 해당 설립 근거 조문이나 장·절의 제목에서는 정식 명칭을 사용함.

####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및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서는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6호

제안일자 : 2022.4.14.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 위원회의 고유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의 제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정식 명칭 기재(안 제5조제4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조의 제목 변경(안 제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p> <p>② 지방보조금은 <u>법 제32조의2제2항</u>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u>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u>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개정안과 같음</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 ----- -----.</p>
<p>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u>법 제32조의3</u>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p>	<p>제6조(<u>위원회 설치</u>) ① ----- - <u>법 제26조</u>----- ----- -----</p>	<p>제6조(<u>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u>) ① ----- ----- <u>법 제26조</u>----- -----</p>



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출한다.

④ -----  
-----  
----- 선출하며,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하며,  
한 차례만 -----  
있다. 다만, -----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  
-----  
-----.

⑦ (현행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있으며,”를 “있다. 다만,”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4조(보조대상 사업) ----- ----- ----- 제17조----- ----- ----- ----- ----- -----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선출  
한다.

④ -----  
-----  
-----  
----- 선출하며, -----  
-----

없다.

⑤ (생략)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생략)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하며, 한 차례만 -----  
----- 있다. 다만,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 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  
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삭 제>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  
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  
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  
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교부방법) -----  
-----  
-----  
----. ---- 「지방재정법」 제1  
7조제2항-----  
-----  
-----.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

제25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 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 법 제21조제1항-----  
 -----  
 -----  
 -----  
 -----  
 -----  
 -----  
 -----.

②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

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  
-----  
-----  
-----  
-----  
-----.

② (현행과 같음)